



제 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62호)

2025.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안 제5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1. 3.

다. 회 부 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희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1.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안 제5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조의2(창작공간의 확충 등)</u> <u>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제작·공연·전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예술인의 창작·제작·공연·전시 등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문</u>

	<u>화시설을 문화예술의 거점으 로 육성하는 경우 그 유지보 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조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연장·박물관·도서관 뿐만 아니라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문화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음(제2조제1항제3호바목)¹⁾.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

- 또한,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형 건축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문화시설의 조성·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의 범주에 예술인의 창작공간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창작공간을 문화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높은 임대료와 공공 지원 부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예술계에서는 창작활동 위축과 문화향유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창작공간은 예술가 개인의 작업실을 넘어 지역 주민과 문화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장하역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공공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관련 사업 현황

○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
'24년	6,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민간 공연장 기획공연 및 공간 운영 경비 일부(공동 기획 공연, 자체 제작 공연)
'25년	6,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년	8,5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
'24년	7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지원) 공연예술 연습 공간 운영비 지원 인구소멸지역 공연예술 연습 공간 대관 활성화 지원 ○(간접지원) 운영역량 강화를 통한 공연예술 연습공간 이용 활성화, 연습 공간 대관 관리시스템 고도화
'25년	6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년	47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